

#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2. 10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사유

- 구강보건사업중에서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(스켈링)와 치아홈메우기 진료에 대하여 실비수준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보탬이 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와 치아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(안 제6조제1항)
- 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(안 제6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지역보건법 제9조,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. 보건복지부 고시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
- 입법예고 : '99. 2. 6. ~ '99. 2. 27까지 (고시 제99-17호)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##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6조(기타수가) 제①항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사업인 치석제거(스켈링), 치아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4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.

제②항예방접종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단, 생활보호대상자등 무료대상자는 제외한다.

[별표4]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4>

비보험진료수가(제6조제1항관련)

항 목	단 위	진료수가
치석제거(스켈링)	전악	20,000원
치아홈메우기	1회	3,300원

## 신.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								
<p>제6조(기타수가)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,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기타수가) ①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진료수액표에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보건사업인 치석제거(스켈링), 치아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4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단, 생활보호대상자등 무료대상자는 제외한다</p> <p>&lt;별표4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보험진료수가(제6조제1항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 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 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료수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치석제거(스켈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약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치아홈메우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,3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 목	단 위	진료수가	치석제거(스켈링)	전 약	20,000원	치아홈메우기	1 회	3,300원
항 목	단 위	진료수가								
치석제거(스켈링)	전 약	20,000원								
치아홈메우기	1 회	3,300원								